

##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(4-4-20)

제정 : 2019. 01.28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(제32조의 3) 및 건양대학교의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「사립학교법」,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」,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」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“기금”이라 함은 대학의 연구 장려, 건축비용 지급, 장학금 지급, 퇴직금 지급, 대학발전 등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 계획 중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기획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③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④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⑤ 간사를 둘 수 있다

**제6조(임기)**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

있다.

- ③ 위원장은 실무와 관련된 부서 팀장 및 팀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

**제8조(준수사항 및 면책)** ①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,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②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9조(독립성)**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관계 부서의 협조)** 관계 부서는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